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2013. 2. 27.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1] 서문 1
[2] 제4조 일반의무 3
[3] 제6조 장애여성 5
[4] 제7조 장애아동 7
[5] 제8조 인식제고 9
[6] 제9조 접근성 11
[7] 제11조 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13
[8]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5
[9]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6
[10]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9
[11]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21
[12]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26
[13]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 28
[14] 제22조 사생활 존중 31
[15] 제24조 교육 32
[16] 제25조 건강 33
[17] 제27조 노동과 고용 36
[18]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39
[19]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 41
[20]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등에 대한 참여 43
[21]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45

세부목차

[1] 서문 ····· 1

[2] 제4조 일반의무 ····· 3

1.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 3
2. 장애등급제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제공 ····· 3

[3] 제6조 장애여성 ····· 5

1. 장애여성의 정규교육 수준 저조 ····· 5
2. 장애여성 모성 및 폭력으로 부터 보호 미흡 ····· 6

[4] 제7조 장애아동 ····· 7

1. 장애아동 교육지원체계 미흡 ····· 7
2.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미흡 ····· 8

[5] 제8조 인식제고 ····· 9

1.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 개선 미흡 ····· 9

[6] 제9조 접근성 ····· 11

1. 편의제공 관련 법령 미비에 따른 접근성 보장 미흡 ····· 11
2. 생활 주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리 미흡 ····· 11

[7] 제11조 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 13

1. 위기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안전보장 미흡 ····· 13

[8]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 15

1. 성년후견제에 따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 15

[9]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 16

1. 인신보호구제 청구권자 제한에 시설수용자 권리구제 한계 ····· 16
2.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파악 미흡 ····· 16
3. 정신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비자의 입원조치 ····· 17

세부목차

[10]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19

1. 신고자 보호체계 미흡으로 시설생활 장애인 인권침해 지속 ··· 19

[11]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 21

1.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미흡 ····· 21
2.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서비스 이용대상 제한 ····· 22
3.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미흡 ····· 24

[12]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 26

1. 대중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미흡 ····· 26

[13]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 ····· 28

1. 정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보장 미흡 ····· 28
2. 청각장애인의 수화 언어에 대한 법적보장 미흡 ····· 29

[14] 제22조 사생활 존중 ····· 31

1. 장애인의 초상권 침해 ····· 31

[15] 제24조 교육 ····· 32

1.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시스템 및 편의시설 미흡 ····· 32

[16] 제25조 건강 ····· 33

1.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미흡 ····· 33
2.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지속 ····· 34

[17] 제27조 노동과 고용 ····· 36

1.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따른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 36
2.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미흡 ····· 37

세부목차

[18]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39
1.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 미흡 ····· 39
2. 부양의무제로 인한 장애인 생활 보장 미흡 ····· 40

[19]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 ····· 41
1. 선거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제공 미흡 ····· 41
2. 장애인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비밀투표권 보장 미흡 ····· 42

[20]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등에 대한 참여 ····· 43
1. 관광, 여가생활 등에 있어 장애인 차별 ····· 43

[21]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 45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부족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 미흡 ···· 45

[1] 서문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1. 11. 25.「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이다.

○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국내 이행 등에 대한 연구, 권고 및 의견표명, 장애차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개인 및 집단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 장애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차별 관련 직권·방문조사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 대한민국정부는 협약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제1차 국가보고서를 지난 2011. 6.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협약 제35조 제1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보고서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취한 조치 및 진척사항 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하며, 협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존재하는 장애요인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향후 대책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 그러나 국가보고서는 협약이 국내에 발효된 2009. 1.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제도, 사업 등을 나열하고 있을 뿐, 협약이 발효된 이후 협약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구체적 조치 및 진척사항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향후 정책 및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작성 방향

○ 위원회는 협약의 각 조문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겪는 문제점들이 쟁점목록에 부각될 수 있도록 장애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 의견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라 한다)이 2008. 4. 11. 시행된 이후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고 있으나 적극적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내용, 장애인의 인권 증진 및 보호 의무 이행에 있어서 법령·제도 미비 및 법령 간 상충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한 권고안(Proposal of Recommendations)을 포함하였다.

[2] 제4조 일반의무

1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09. 1. 10. 협약의 발효이후 위원회의 권고와 장애단체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진정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

○ 이로 인하여 장애인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이를 국내 법제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가 제한되고 있다.

□ **권고안**

○ 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 및 조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협약의 실질적 이행과 장애인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2 장애등급제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고 이를 정부가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 현행 장애등급제는 장애유형이나 등급이 같아도 개인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서비스 및 복지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장애의 다양성 및 장애인의 욕구

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정부는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 권고안

○ 정부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개별 욕구 및 필요에 따른 서비스 및 급여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3] 제6조 장애여성

1 장애여성의 정규교육 수준 저조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보고서는 “장애여성의 교육수준이 장애남성에 비해 낮다”고 기술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고, 장애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시된 대안들은 정규교육(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기회가 아닌 사회적 교육 기회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중 무학은 22.1%로 남성장애인 4.4%의 5배에 달하고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5.9%로 남성장애인 16.5%의 1/3에 불과하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은 22.7%로 전체 여성 취업률 48.1%, 남성장애인 취업률 44.8%와 비교해 절반 정도이다.

○ 2012년 장애인백서(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12.)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교육 기회 배제는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 후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연결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 문제가 지적된다.

□ 권고안

○ 정부는 정규교육 과정에서 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장애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정규교육 과정에서 장애여성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여성의 교육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2 장애여성 모성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경우 유산 경험이 48.7%,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험이 9.9%로 나타났다.

○ 2011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임신출산 전문병원' 등의 모성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으나, 이를 지원할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무시나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은 7.6%(83,517명)로 이중 2.1%(23,236명)는 빈번하게 폭력을 경험하고, 이 경우 가해자는 배우자가 36.0%, 자녀 20.7%, 형제자매 17.4%, 부모 15.9% 순으로 나타났다.

○ 2013. 5.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 15,970건 중 장애인 대상 범죄는 228건(1.4%) 이었으나, 2012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 22,953건 중 장애인 대상 범죄가 656건(2.8%)으로 조사되었고, 201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장애유형별 성폭력 상담현황을 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의 70% 이상이 지적장애 여성으로 확인되었다.

□ 권고안

○ 정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주거, 모성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 정부는 장애여성의 경우, **여성과 장애가 갖는 이중고로 인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예방 및 피해 장애여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제7조 장애아동

1 장애아동 교육지원체계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사 배치 기준을 장애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2013년 9월 발간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9년 5.4명, 2010년 5.2명, 2011년 5.2명, 2012년 5.1명, 2013년 5.0명으로 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권고안

○ 정부는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특수교원 수를 법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증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외형적 규모나 인원수 보다는 그 성격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운영의 일관성 유지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3년 장애아동 학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아동 학대는 2012년 전체 아동학대 건수 6,403건 중 256건(4%)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1년 장애아동 학대 피해 사례 248건 중 166건이 재신고된 것으로 전체 장애아동 학대 피해 사례의 66.9%에 해당되고, 장애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2012년 212건(82.8%), 친인척 27건(10.6%), 타인 16건(6.2%)으로 나타났다.

○ 장애아동은 보호시설도 부족하고, 공동생활가정도 없기 때문에 학대를 당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원가정 복귀 시 학대에 또 다시 노출될 위험이 있다.

□ 권고안

○ 정부는 장애아동들이 학대받지 않고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아동 전담보호시설도 확대**해야 한다.

○ 정부는 **장애아동 학대 및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아동의 특성을 학대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5] 제8조 인식제고

1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 개선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보고서에는 초·중·고등학생, 공무원, 근로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안내책자 배포, 공익광고 등을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09년 실시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 인식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비장애인)의 약 67%가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많거나, 많은 편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49%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소속 직원 및 근로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 또한 국가보고서에는 공무원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교육 실시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위 인식개선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 진정 및 상담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 권고안

○ 정부는 공공기관 및 일반 회사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 및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형식적 교육이 아닌 **장애차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제9조 접근성

1 편의제공 관련 법령 미비에 따른 접근성 보장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물 중 공공기관 청사, 여객시설, 철도역사,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정비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이 법 시행 후 2~7년 이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기타 일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예 :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병원,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1998. 4. 11. 이후 신축·개축 등을 하는 때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편의증진법」 상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이 일정 면적기준 이하인 경우 일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물에서 상당수가 제외된다.

□ **권고안**

○ 정부는 일정 면적기준 이하로 건축되어 **「편의증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일반 대중들이 실제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생활 주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리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령상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기준은 건물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각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

른 차이나 실제 비장애인도 이를 이용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 또한, 일부 건축물은 장애인전용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1개만 설치하여 이용 장애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주관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용 화장실 적정설치율은 39.9%에 불과했다.

○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항, 버스터미널, 공연장, 경기장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등의 불법주차 사례가 많고 관계기관이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진정이 위원회에 매년 접수(2008~2013년 동안, 진정 : 총 86건, 상담 : 14건) 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2012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신고에 대한 미처리 건수는 2009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총 28,692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환산하면 28억 7천만원에 해당한다.

○ 국가보고서에는 정부가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화장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적시하고 있지 않다.

□ 권고안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기준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남녀공용으로 설치된 장애인전용 공중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제11조 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1 위기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안전보장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112범죄신고 접수센터는 수화 및 필담 등을 이용한 영상통화 신고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민간 자동차보험회사의 경우, 사고신고 접수를 음성전화로만 받기 때문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이 위기에 처한 경우 신속히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소방방재청은 화재 및 지진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지 않아 화재, 지진 등 위기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 국가보고서에는 범죄신고나 교통사고 신고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신고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고층건물에서 화재 및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체장애인이 피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 권고안

○ 정부는 청각 및 언어, 지적장애인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수화 및 필담 등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신고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12 범죄신고센터나 민간 자동차보험 회사 등 긴급상황을 접수하는 모든 영역에서 신고접수 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고층건물 등에서 화재 및 지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장애인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피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8]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성년후견제에 따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행위무능력자제도(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그들의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박탈하여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민법의 개정을 통해 행위무능력자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하였다. 그런데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규정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관계부처들의 준비도 미흡하였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3. 5. 16.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방안 마련 정책권고」를 하였다.

□ 권고안

○ 정부는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위 제도가 장애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제한·박탈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9]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인신보호구제 청구권자 제한에 따른 시설수용자 권리구제 한계

□ 현황 및 문제점

○ 「인신보호법」 제정으로 위법한 인신구속에 신속하고 용이한 구제절차를 갖출 수 있게 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구제청구건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정신장애인을 부당구금이나 타 병원 전원으로 인한 장기입원 등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제청구권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를 구제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자(예 : 부당구금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청구권이 없다.

○ 국가보고서에는 「인신보호법」의 한계와 법원의 구제명령 현황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 않다.

□ 권고안

○ 정부는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채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시설수용자를 부당구금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신보호법」의 구제청구권자를 확대**해야 한다.

2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파악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보고서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자 권리 보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장애인 수용자의 현황(장애인

수용자 전체 인원, 유형별 인원 등)과 수형생활에 대한 편의(시각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점자도서 제공 등)제공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고, 또한 치료감호를 위해 구금된 정신장애인의 현황과 이들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 권고안

○ 정부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법률적 권리 보호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3 정신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비자의 입원조치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병상 수는 지난 10년간 2만개 이상 증가(2012년 현재 8만4천여 병상) 하였지만, 입원의 70% 이상은 비자의 입원이다.

○ 정부(보건복지부)가 2014. 1. 16. 발의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가 2009년에 권고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경우 아직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달리 정하여 입원적정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정신장애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서만 입원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므로 입원 기간과 입원적정성 심사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 권고안

○ 정부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의한 입원을 일원화 하여 2주간의 진단을 위한 입원과 3개월간의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나누고, **계속입원심사를 단축하기 위하여 3개월 간격으로 계속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 정부는 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통한 퇴원 활성화 및 심사의 일관성을 위하여 **심판위원회에 정신장애인을 대변하는 인권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입원기간 연장이 3회 이상인 경우 동일한 기초 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가 아닌 광역 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심사는 **대면심사가 원칙이 되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10]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신고자 보호체계 미흡으로 시설생활 장애인 인권침해 지속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제보·진정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부 제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실을 제보한 후 시설에서 해고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우려해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방관하거나 위원회 조사 시 진술을 거부 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보다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나, 공익침해 행위 대상법률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등 총 180개의 법률만을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보건법」등은 제외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 국가보고서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근절대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권고안

○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사후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실을 신고, 제보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보건법」, 「편의증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추가해야 한다.

[11]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1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18만 3천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약 16만 7천명, 자폐성장애인이 약 1만 6천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등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부족하여 학습, 대인관계,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삶의 전반에 어려움이 있으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체계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은 학대, 방임,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예컨대, 2011년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사례 중 72.8%가 지적장애인으로 나타났고, 연 1회 이상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지적장애여성은 22.5%로 나타났다.

○ 현재의 복지체계는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장애계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정부에서도 2013년 내에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각기 다른 국회의원이 두 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위 법안들은 2014년 2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내 법률 및 정책으로는 「장애아동지원법」, 성년후견인제도, 발달장애인지원계획(보건복지부, 2012) 등이 있으나, 서비스 총량의 부족, 지역별 편차,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은 적절한 지원을 받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권고안

○ 정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지원 및 권리옹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2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서비스 이용대상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하여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시행되었고,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1년부터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 그러나 서비스의 필요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표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신청자격을 장애 1~2급으로 제한하고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선택·고용·관리할 수 없는 점, 또한 서비스의 제공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한편, 65세 노인이 되면 신청자격을 박탈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나이가 들더라도 요양이 아닌 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서비스의 단절로 인해 사회참여 및 생활의 질이 후퇴될 위험이 있다.

○ 위원회에서도 2012년 10월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2017)」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서비스 대상의 확대,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65세 이상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부여, 서비스 질 관리 대안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 권고안

○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정도 결정기준, 관리감독방안,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각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위원회에서 2013년 12월 발간한 「장애인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 2012년 실시한 '시설장애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 정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자립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자립을 위한 초기자금의 부족, 시설 퇴소 후 생활할 주거공간의 부재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구분	소계		지체장애인 시설		시각장애인 시설		청각언어장애 인시설		지적장애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시설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2004	18,906	237	2,357	31	717	12	674	11	7,750	96	7,117	82	291	5
2005	19,668	265	2,332	31	632	13	735	12	8,015	110	7,657	93	297	6
2006	20,598	288	2,281	30	824	15	728	12	8,408	122	8,038	102	319	7
2007	21,709	314	2,283	33	792	14	521	11	9,325	131	8,345	116	443	9
2008	22,250	347	2,292	33	784	14	546	11	9,192	144	8,981	136	455	9
2009	23,243	397	2,230	38	760	14	519	11	9,539	172	9,728	153	467	9
2010	24,395	452	3,673	40	873	14	386	10	14,338	196	4,813	182	312	10
2011	25,345	490	2,102	39	787	15	361	9	10,788	226	10,798	191	509	10
2012	26,476	553	2,052	40	753	16	335	8	11,812	278	11,014	201	510	10

출처 : 보건복지통계연보(2013, 보건복지부)

○ 뿐만 아니라 2011년 위원회가 실시한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무상임대주택 등 주거지원대상자라는 이유로 주거급여가 삭감 혹은 미지급되는 경우, 장애등급이 하락하여 장애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비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체험홈이 부족하여 입소가 어렵다는 점,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 공적 주거물량이 부족한 문제, 거주시설 내 편의시설이 미비한 문제가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원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적고, 공공시설 및 관공서 내 수화통역사, 안내도우미 등 인적서비스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 권고안

○ 정부는 장애인이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기 위해,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의 일반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주거나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필요한 대안적 주거지원이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그 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들이 자립에 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12]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1 대중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모든 교통수단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이동편의시설(휠체어 승강설비)을 설치해야 할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만을 규정하고 있고, 고속버스, 마을버스, 공항리무진버스 등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시외버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설치한 시외버스, 농어촌버스는 국내에 전무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014. 1. 발표한 「201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2013. 9월말 기준 전국의 시내버스 총 33,225대 중 저상버스는 총 5,447대로 16.4%를 차지하며,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은 매년 감소 추세다.

○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구간 및 지하철역 등을 연계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 국가보고서 및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에는 저상시내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고속버스, 마을버스, 공항리무진버스 등에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권고안

○ 정부는 **고속버스, 마을버스, 공항리무진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등을 포함한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이 접근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 및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비(안내방송, 문자안내판 등)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13]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

1 정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보장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2009. 4. 11.부터, 그리고 법인(法人)은 2013. 4. 11.부터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2년 실시한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평균 93점(100점 만점)이나, 민간은 67점으로 나타났고, 2013년 국가정보화백서(한국정보화진흥원 발간)에는 장애인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털, 금융, 쇼핑 등 민간부문에서 웹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 IT 활용 등에 있어서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격차 통계(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에 따르면, 양적활용 측면에서 격차지수*는 25.1, 질적활용 측면에서 격차지수는 27.5로 확인되었다.

* 격차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장애인 정보화수준

○ 국가보고서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인방송(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을 말한다) 제작 인프라가 열악한 점과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자막 100%, 화면해설 10%, 수화통역 5%) 달성시점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당초 2013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하고,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초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13. 12 .12. 입법예고 하였다.

□ 권고안

○ 정부는 2013. 4. 11.부터 법인(法人)도 장애인이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장애인의 실생활에 유용한 포털, 쇼핑, 금융 등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 전자정보,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정부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각 방송사업자에게 당초 부여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자막 100%, 화면해설 10%, 수화통역 5%) 달성시점을 연장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장애인방송을 위한 인프라 환경구축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청각장애인의 수화 언어에 대한 법적보장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들의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고용촉진법」, 「방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수화통역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보조언어 또는 서비스 수단의 관점일 뿐,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3. 위원회의 '장애인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청각장애 특수학교 재직교사 중 수화통역 자격 보유자가 5% 미만에 불과하고, 통합교육 현장에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6곳 밖에 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 권고안

○ 정부는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방송서비스를 확대하고, 법령에 수화에 대한 규정을 명기하여 수화언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4] 제22조 사생활 존중

1 장애인의 초상권 침해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품을 전달하는 일부 자원봉사자 및 정치인 등이 장애인의 사진을 촬영 후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이를 게재하거나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격권 침해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일부 장애인단체가 후원을 받기 위해 제작한 인쇄물과 홈페이지에 장애인의 사진을 게재, 배포하여 문제된 사례도 있었다.

○ 일부 직장 및 학교에서는 직원 및 학생들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봉사활동 중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 사진이 활용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 국가보고서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 권고안

○ 정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한 자원봉사자 등이 봉사활동과정 및 후원금품 등의 전달과정에서 또는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이 이를 모금·모집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의 사전동의 없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을 위하여** 공공기관,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종사자, 회사원, 각급학교 학생, 언론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5] 제24조 교육

1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시스템 및 편의시설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현황(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10.)에 따르면 전국 242개 조사대상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도 전혀 설치되지 않은 대학이 총 111개로 약 46%에 이른다.

○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통계(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에 의하면, 특수학교는 93.8%로 비교적 높은 반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78.6%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경우, 통합교육을 받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권고안

○ 정부는 2011. 4. 11.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에 장애학생지원부서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내 교실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장애인이 이동·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상기하고,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유형 별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 제25조 건강

1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에 소재한 동네 의원, 병원 등 1, 2차 진료기관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화장실 등)이 잘 갖춰지지 않아, 중증장애인은 간단한 진료 및 처방을 받을 경우에도 편의시설이 갖춰진 원거리의 1, 2, 3차 진료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설사 거주지 가까운 곳에 편의시설이 구비된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2차 진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시간적, 경제적 비용(교통비, 진료의뢰서 발급비 등)이 추가로 발생함에 도불구하고 편의시설이 갖춰진 원거리의 1, 2차 진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1, 2차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장애인이 상급병원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은 경우를 재활의학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용이 제한적이다.

○ 2012년 장애인백서(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12.)에 의하면, 서울 시내의 일개 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승강기, 접수대, 장애인전용화장실 등은 적합설치비율이 각각 6.3%, 6.3%, 4.4% 등으로 낮았으며, 장애인전용주차장과 점자블록은 각각 1.3%와 0.6%에 불과하였다.

○ 국가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다.

□ 권고안

○ 정부는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 소재한 1, 2차 진료기관에 중증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행정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1, 2차 진료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지속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8월 22일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에게 「상법」 제732조의 삭제, 「보험업법」 개정, 장애 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의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정부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으나, 아직도 의사능력의 판단주체와 개념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협약 제25조 (e)의 유보 역시 철회되지 않고 있다.

○ 한편, 2010년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 제97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2012. 11. 26.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차별에 대한 진정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차별사건은 2008. 1. ~ 2013. 12.까지 총 331건에 달한다.

□ 권고안

○ 정부는 **상법 제732조 삭제** 및 **협약 제25조 (e)의 유보를 철회하고, 장애인의 사망률, 질병발생률, 재해발생률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마련하여 보험사들이 객관적 근거 하에 장애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고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사유로 장애인들이 보험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제27조 노동과 고용

1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따른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임금법」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2013년 시간당 4,860원)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2013. 10. 국정감사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138개 사업장 중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53%인 73개이며, 특히,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15%인 21개에 이른다.

○ 국가보고서에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 및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권고안

○ 협약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협약당사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사업장 현황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2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172시간 한도에서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서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인 중증장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근로지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보고서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지 않다.

○ 공무원의 임용, 승진, 복리후생 등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는 「균형인사지침」,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인적 편의제공 규정을 마련해두고는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인지도가 매우 낮고,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제공범위, 근로지원인 자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2012년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4,805명(전체 국가공무원 대비 3.27%) 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8,306명(전체 지방공무원 대비 3.82%)이다.

○ 한편, 협약은 당사국이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편의 중 하나로 보조인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 권고안

○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에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배치 등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

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8]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장애인백서(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12.)에 의하면, 현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약간의 지원을 통해 더 나은 경제 상태로 이끌 수 있는 장애인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비수급 장애인의 경제상태가 더 빈곤한 기초수급 장애인보다 열악한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가구는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해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최저생계비에 의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데 국가보고서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 한국의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그런데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소득기준으로 수급대상자를 제한함으로써 일정 기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장애인은 부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권고안

○ 정부는 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부양의무제로 인한 장애인 생활 보장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위원회가 실시한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심사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가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법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일정부분의 재산 혹은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재산 또는 소득 기준이 상당히 낮아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가족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인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위원회는 2012년 10월,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년~2017년)」을 발표한바, 부양의무제로 인해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춘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13%에 달하는 103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장애인은 성인이 되더라도 소득활동이 쉽지 않아 수급자 선정기준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반영하고, 성인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 권고안

○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장애당사자의 가족에게 전가시키는 부양의무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장애당사자 개인의 상황을 근거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

1 선거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제공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및 수화통역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사용 등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공직선거법」과 서로 상충된다.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책자형 선거공보에 담겨진 정보를 점자로 제작할 경우 더욱 많은 면수가 소요됨에도 이 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생산·배포하는 주체가 개인일 경우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국가보고서에는 「공직선거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음을 서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법이 서로 상충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권고안**

○ 정부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임의규정으로 된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규정들을 강행규정화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완화하며,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2 장애인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비밀투표권 보장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공직선거법」은 병원이나 요양소에 기거하는 사람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장 또는 직원의 투표강요와 대리투표 등의 투표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한 장애인시설에서의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아직까지 지적되어온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투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권고안**

○ 정부는 **시설 내에서의 직원에 의한 투표강요 또는 대리투표 등으로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투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관광, 여가생활 등에 있어 장애인 차별

□ 현황 및 문제점

○ 관광버스 및 지자체에서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대부분 장착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관광 및 레저활동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국내외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관광회사에서는 패키지 투어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신청을 받지 않거나 별도의 가이드를 고용하여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또한 같이 여행하는 다른 관광객들이 싫어하거나 불편해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광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비장애인은 항공기나 철도를 이용하여 관광지에 도착한 후 자동차 대여업(렌트카 업체)을 하는 회사로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차량을 임차하여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으나,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게 운전보조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임차해주는 렌트카 업체는 거의 전무하다.

○ 국가보고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다.

□ 권고안

○ 정부는 **관광버스 및 전국 주요도시에서 운행 중인 시티투어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정부는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장애인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관광회사로부터 추가비용 없이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활동보조인 등을 동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구비한 **차량 대여(렌트카) 업체에는 장애유형에 맞는 차량들을 구비하여 장애인에게 임차할 수 있도록 차량 대여업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21]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부족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소위 파리원칙(Paris Principle)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인적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및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 4월 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21.4% 축소[2008년 208명 → 2009년 164명(44명 감축)] 하였으며, 2011년 10월에 장애차별조사과 신설 등을 이유로 일부 인력을 증원하여 2014년 2월말 현재 정원은 188명이 되었으나, 아직 조사관 인력이 부족하여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제한되고 있다.

□ 권고안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로 인해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해 줘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차별 진정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측면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정사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 인력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력 충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